규제영향분석서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목 차>

1.시험원 자격요건 강화(의미 명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자	이름	류제환
	담당부서(과)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직급	방송통신주사보
	국장	서성일		연락처	061-338-4721
	과장	신홍순		이메일	273hvtrjh@mail.go.kr

2023. 05. 17.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table>
<tr><td rowspan="4">기본
정보</td><td>1.규제사무명</td><td colspan="3">시험원 자격요건 강화(의미 명확화)</td></tr>
<tr><td>2.규제조문</td><td colspan="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제1호</td></tr>
<tr><td>3.위임법령</td><td colspan="3">「전파법」 제58조의5,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td></tr>
<tr><td>4.유형</td><td>강화</td><td>5.입법예고</td><td>2023.06.08~2023.06.28</td></tr>
<tr><td rowspan="4">규제의
필요성</td><td>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td><td colspan="3">o (추진배경)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 행정청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개정할 필요
o (정부개입 필요성) 행정기관은 법령이 누구에게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해석이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td></tr>
<tr><td>7.규제내용</td><td colspan="3">o 기존 조문인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에 대해 복수의 시험분야를 지정받은 경우 서로 다른 시험원이 최소 2명이 되도록 부연 규정을 추가</td></tr>
<tr><td>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3">o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53개 지정시험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지정시험기관</td><td>53개</td></tr></table></td></tr>
<tr><td>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td><td colspan="3">o (도입목표) 해당 조문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해석이 되도록 규정
o (기대효과)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확보로 투명한 행정 작용이 가능</td></tr>
<tr><td rowspan="6">규제의
적정성</td><td rowspan="5">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td><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
<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
<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
<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o 기존법령에 따라 시험분야별로 2명 이상의 시험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므로, 본 규제 도입으로 추가 고용 인력 비용 발생은 없음
o 시험분야별 서로 다른 2명의 시험원 확보로 적합성 평가 시험의 신뢰성이 제고되며, 방송통신기자재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td></tr>
<tr><td>11.영향평가
여부</td><td>기술영향평가</td><td>경쟁영향평가</td><td>중기영향평가</td></tr>
<tr><td></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d>해당없음</td></tr>
<tr><td>기타</td><td>12.규제일몰제</td><td>대분류</td><td colspan="2">소분류</td></tr>
<tr><td></td><td></td><td>일몰설정 예외기준</td><td>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td><td>미해당</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td><td></td><td></td><td>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td><td>미해당</td></tr>
<tr><td></td><td></td><td>경제규제 여부기준</td><td>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td><td></td><td></td><td>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td><td>미해당</td></tr>
<tr><td></td><td></td><td>일몰설정 세부기준</td><td>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td><td>미해당</td></tr>
<tr><td></td><td></td><td></td><td>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td><td>미해당</td></tr>
<tr><td></td><td></td><td colspan="3"><table>
<tr><th>일몰설정여부</th><th>일몰조문</th><th>연장여부</th></tr>
<tr><td>미설정</td><td></td><td></td></tr>
<tr><th>일몰유형</th><th>일몰설정기간</th><th>일몰주기</th></tr>
<tr><td></td><td></td><td></td></tr>
</table></td></tr>
<tr><td></td><td>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td><td colspan="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에 대해 규정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부연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산업 · 신기술 관련 우선허용 · 사후규제 적용 비대상</td></tr>
<tr><td></td><td>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td><td colspan="4"><table>
<tr><th>적용여부</th><th>비용</th><th>편익</th><th>연간균등순비용</th></tr>
<tr><td>미적용</td><td>0</td><td>0</td><td>0</td></tr>
</table></td></tr>
<tr><td></td><td>15.규제정비 계획</td><td colspan="4">「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5항</td></tr>
</table>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 해당 시험 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시험경력이 있는 자 2. ~ 4. (생 략) ②·③ (생 략)	제5조(지정요건 등) ① ---------- ---------- ---------- ----------. 1. ---------- 2명 이상(시험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시험분야별로 서로 다른 시험원이 최소 2명은 되어야 함) ----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 2024년 1월 1일 ---------- ----------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개요)「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시험기관 지정 고시')」에 규정

- 또한,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에 따라 방송통신 시험분야를 5개(유선, 무선, 전자파적합성(EMC), 전자파흡수율(SAR), 전자파강도(EMF))로 분류하고 있음

o (추진배경) 시험기관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을 규정하는 조문이 행정청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

- (현황) 시험기관 운영·관리에 대한 해설을 담은 문서를 배포* 및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해설서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관리 중

* 1)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17(`18.1.3., ISO/IEC 17025 해설서 배포 협조 요청)
2)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1168(`21.9.14., ISO/IEC 17025 해설서 전면개정에 따른 배포)
<겸직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
· 시험원은 시험분야에 상관없이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지정고시」제5조(지정요건 등)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은 준수되어야 한다.**
(예) 무선분야 시험원 A, B(2명), EMC분야 시험원 C(1명)이 있는 경우, 시험원 B가 EMC분야 시험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정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인원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2개 분야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원의 최소 인원수는 4명을 확보하여야 하고 분야별로 2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 (문제점) 지정·관리 현황과 달리 해당 조문(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은 2명의 동일한 시험원만으로 여러 시험분야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

o (정부개입 필요성) 행정기관은 법령이 누구에게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해석이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

- 규정을 명확하게 예측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확보로 투명한 행정작용이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안)
	내용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 `23. 5월 현재 53개 지정시험기관에서는 이미 시험분야별로 최소 2명 이상 서로 다른 시험원을 확보하고 있음
규제대안1	대안명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 (수정안)
	내용	의미 명확화를 위해 '시험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시험분야별로 서로 다른 시험원을 최소 2명 확보' 부연 규정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 (연구반안)
	내용	해당 시험분야별 최소 2명은 다른 시험분야에 대한 겸직 금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ㅇ 조문 해석의 다툼 여지 존재
규제대안1	ㅇ 조문 해석의 다툼 최소화	-
규제대안2	ㅇ 조문 해석의 다툼 최소화	ㅇ 겸직금지 시 인력운영 관련 시험기관 부담 가중 ㅇ 겸직금지 시 시험원의 타 분야 역량 향상 제한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53개 지정시험기관	ㅇ 규제대안 2(시험원 2명, 겸직금지) 내용으로 의견조회하였으며, 시험기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	**< 수용 >** ㅇ 대안2의 겸직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겸직은 가능하되 각 해당 시험분야별로 서로 다른 시험원을 최소 2명 확보하도록 수정안(규제대안1) 마련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외부전문가 회의(`22. 9~12월)에서 마련된 연구반안(규제대안2)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3.1월)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규제대안1)을 마련

- 연구반안(대안2)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 총 53개 기관 중 33개 기관이 응답(찬성 16개 기관, 반대는 17개 기관)하였으며,
-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른 2명을 확보하는 것은 동의하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기관 운용 여건에 부담된다는 다수 의견

〈 규제대안2에 대한 지정시험기관 주요 의견 〉

기 관	내 용
가 시험기관	연간 건수가 낮은 시험분야에 대해 전용 시험원 2명 운영은 시험기관 인력 운영효율이 떨어짐
나 시험기관	시험분야별 업무 유사성을 감안하여 겸직하게 할 필요, One stop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건수가 낮아도 시험분야를 유지중
다 시험기관	시험분야별 최소 2명 확보 원칙은 동의하나, 유사분야 겸직 허용 필요
라 시험기관	겸직금지는 인원 활용에 불합리하고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 감안 필요
마 시험기관	1개 시험항목만 지정받은 시험분야를 가진 시험기관은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바 시험기관	각 시험분야에 겸직 없이 시험원 채용 자체가 힘든 상황
사 시험기관	시험물량이 적은 시험분야에 겸직 없이 2명을 고정하는 것은 어려움
아 시험기관	해설서 내용을 적용하여 시험분야별 최소 2명은 중복없이 보유하게 할 필요 예1) 보유분야(EMC, EMF) 2개, 시험원 3명(모두 겸직) - EMC : 2명, EMF : 1명 ==> 불가 예2) 보유분야(EMC, EMF) 2개, 시험원 4명(모두 겸직) - EMC : 2명, EMF : 2명 ==> 가능
자 시험기관	겸직불가 시 일자리 창출 및 인증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고정인원 배치는 시험원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항이며, 기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때 겸직불가 조항은 삭제되어야함
차 시험기관	최소 2명을 확보해야하는 의미로 겸직 금지는 반대, 분야별 2명의 시험원을 확보하되 겸직가능한 형태로 운영 필요
카 시험기관	겸직없이 독립적인 시험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타 시험기관	겸직이 안되는 시험원을 2명 유지를 해야한다면 해당 분야 반납을 고려
파 시험기관	겸직금지는 반대하며, 안될 경우 현재 겸직자들은 허용 필요
하 시험기관	관련 시험이 단순한 시험분야의 경우 시험접수건수가 적어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
거 시험기관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 시험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시험분야의 고정인원 2명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너 시험기관	지정시험기관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 겸직 금지 시 능력 배양에 제한을 두게됨
더 시험기관	보유 인원 활용해야하는 작은 규모의 시험기관은 다른분야 자격이 있음에도 하나의 시험분야만 수행해야 하므로 인원활용도에 있어 손해 발생하며, ISO/IEC 17025 해설서 내용과 같이 변경하였으면 함

3. 규제목표

o 해당 조문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해당 조문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해석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table>
<tr><td colspan="2">① 규제 영역</td><td>운영관리</td></tr>
<tr><td colspan="2">② 규제 방식</td><td>기준설정</td></tr>
<tr><td colspan="2">③ 예비분석모델</td><td>정성모델</td></tr>
<tr><td></td><td>판단 근거</td><td>국내 다른 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의 시험인력 자격요건과 유사한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정성모델로 예비분석</td></tr>
<tr><td colspan="2">④ 대상 업종</td><td>「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된 53개 시험기관</td></tr>
<tr><td colspan="2">⑤ 예비분석내용</td><td>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ㅇ (관련 법령) 과기정통부는「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함

ㅇ (법인 분류) 대상 집단은 53개 지정시험기관 중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12개와 특수한 4개 시험기관*을 제외하고 영리법인은 37개임

<table>
<tr><th colspan="2">영리법인</th><th colspan="2">비영리법인</th></tr>
<tr><td>시험업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법인</td><td>시험업무를 통해 매출 발생이 없는 법인*</td><td>재단법인</td><td>특수법인</td></tr>
<tr><td>37개</td><td>4개</td><td>6개</td><td>6개</td></tr>
</table>
* 삼성, LG(각 2개 시험기관) 내에 설치되어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자사 제품의 오류 수정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매출 미발생

ㅇ (규모 분류) 중견기업법령 및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라 `22년 조사된 매출 발생 영리법인 37개 중 중견기업 1개, 중소기업 36개로 파악

- 37개 시험기관 대부분이「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 시험분야 외에 타 법령에서 지정 또는 공인하는 시험·검사·인증분야(전기안전, 의료, 건설, 환경, 화학, 효율, 신뢰성 등)도 함께 영위 중

<table>
<tr><th>대상 / 매출 구분</th><th>대상 집단 평균
(매출발생 법인 37개기관)</th><th>중견기업
(한국에스지에스(주))</th><th>중소기업
((주)에이치시티)</th></tr>
<tr><td>전체 매출액</td><td>5,672억원
(100%)</td><td>1,935억원
(100%)</td><td>616억원
(100%)</td></tr>
<tr><td>방송통신 시험분야 매출액</td><td>1,460억원
(25.7%)</td><td>56억원
(2.89%)</td><td>236억원
(38.3%)</td></tr>
<tr><td>타 분야 매출액</td><td>4,212억원
(74.3%)</td><td>1,879억원
(97.1%)</td><td>380억원
(61.7%)</td></tr>
</table>
※ 영리법인 37개 기관 중 `22년도 한국에스지에스(주)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며, 방송통신 시험분야 매출액 최고 기관은 중소기업인 ㈜에이치시티로 확인됨</td></tr>
</table>

② 유사사례 분석

ㅇ 국내 유사 입법례에서도 시험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차등화 기준을 두지 않고 있음

부처	법령 및 내용	차등 적용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 가.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 성능인증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 분야: 2명 이상** 4)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5)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X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3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환경, 화학 등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책임자: 2명 이상 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환경, 화학 등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시험·검사 경력이 있는 시험기술자: 5명 이상**	X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X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 **1.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을 제외한다) **검사대행자** 나. 기술인력 보유기준 **구분** / **보유** 1) 책임검사원 / 1명 이상 **2) 검사원** / **2명 이상**	X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조제3항 관련)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가. 시험·검사 인력에 관한 요건 1)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1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시험·검사하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2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가. 시험·검사인력에 관한 요건 1)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1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수입 축산물 또는 수거 축산물을 시험·검사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이화학, 미생물 항목별로 각 2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X
국가기술표준원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19조(기술책임자), 제21조(실무자) **제19조(기술책임자)** ① KOLAS 공인기관은 공인분야의 업무수행능력과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KOLAS 공인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당분야별로 기술책임자**(숙련도시험운영기관의 경우에는 운영책임자, 제품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책임자에 해당하며, 이하 기술책임자의 의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와 관련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자)** ① KOLAS 공인기관의 기술인력 중 **실무자**의 자격기준은	X

<table>
<tr><td></td><td>
<table>
<tr><th>부처</th><th>법령 및 내용</th><th>차등 적용</th></tr>
<tr><td></td><td>이 요령 별표 6과 같다.
[별표6] 실무자의 자격기준
1. 학력 및 경력요건
나. KOLAS 공인시험 및 검사기관
1) 실무자는 <u>해당분야 업무에 적정한 실무경력을 갖추어야</u>한다.
2) 실무자는 최소 6개월의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td><td></td></tr>
</table>

③ 차등화 대상 결정
ㅇ 국내 타 법령에서도 시험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차등화 기준을 두지 않고 있음
ㅇ 타 법령에 따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나, 해당 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 시험분야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
- 1개 기업이 중견기업((주)한국에스지에스)으로 분류되나 해당 기업의 `22년 방송통신시험분야 매출액(56억원)은 방송통신시험분야 매출액 최고 기관((주)에이치시티) 매출액(236억원)의 1/4 수준으로 방송통신 시험분야에 규제 차등화를 둘 경우 역차별 발생</td></tr>
<tr><td>⑥ 차등화적용 여부</td><td>차등화 적용하지 않음</td></tr>
</table>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본 고시 개정안은 시험기관이 갖춰야할 지정요건 중 시험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고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설정하였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에 대해 규정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부연 규정하려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대상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에 대해 규정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부연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 대상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에 대해 규정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부연 규정하려는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에 대해 규정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부연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후평가관리 적용 대상 아님
규제 샌드박스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중 시험원 요건에 대해 규정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부연 규정하려는 것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시 각 분야별로 기술인력의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
   나.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자동차 분야: 6명 이상**
      2) **대기 분야: 5명 이상**
      3) **수질 분야: 5명 이상**
      4) **소음·진동 분야: 2명 이상**
      5) **토양 분야: 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 4명 이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축산물 등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 시 각 항목별로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요건

1.식품 등 시험·검사 기관

가. 시험·검사 인력에 관한 요건

1)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1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화학,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시험·검사하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2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가. 시험·검사인력에 관한 요건

1)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시험·검사 항목별로 각 1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수입 축산물 또는 수거 축산물**을 시험·검사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이화학, 미생물 항목별로 각 2명 이상의 시험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 (수정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 (수정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 모든 기관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험분야별 2명 이상의 시험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으로 현행 규제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가능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시험기관별 지정받은 시험분야 및 시험분야별 시험원 수, 2022년 〉

기관	시험분야	유선	무선	전자파 적합성 (EMC)	전자파 흡수율 (SAR)	전자파 강도 (EMF)	총인원수
1	무선/EMC/EMF	-	2	16	-	4	22
2	유선/무선/EMC/EMF	2	2	13	-	2	19
3	유선/무선/EMC/SAR	2	2	12	2	-	18
4	무선/EMC/EMF	-	6	18	-	2	26
5	유선/무선/EMC/SAR/EMF	2	11	33	5	2	53
6	무선/EMC	-	3	4	-	-	7
7	유선/무선/EMC/SAR	2	3	7	2	-	14
8	유선/무선/EMC/SAR/EMF	2	2	14	2	2	22
9	유선/무선/EMC	2	2	3	-	-	7
10	유선/무선/EMC/EMF	2	2	2	-	2	8
11	무선/EMC/EMF	-	8	18	-	2	28
12	유선/무선/EMC/SAR/EMF	4	5	4	2	4	19
13	유선/무선/EMC/EMF	2	2	2	-	2	8
14	무선/SAR/EMF	-	9	-	3	2	14
15	무선/EMC/SAR/EMF	-	2	14	2	2	20
16	유선/무선/EMC/SAR/EMF	2	28	17	15	2	64
17	무선/EMC/EMF	-	2	3	-	2	7
18	유선/무선/EMC/SAR/EMF	2	11	23	7	2	45
19	유선/무선/EMC/SAR/EMF	2	17	35	9	10	73
20	유선/무선/EMC/SAR/EMF	2	5	14	2	2	25
21	유선/무선/EMC/EMF	2	4	4	-	2	12
22	유선/무선/EMC/SAR/EMF	2	2	2	2	2	10
23	유선/무선/EMC	2	2	3	-	-	7
24	유선/무선/EMC/SAR/EMF	2	7	12	5	2	28
25	EMC	-	-	4	-	-	4
26	유선/무선/EMC	2	3	8	-	-	13
27	유선/무선/EMC/EMF	2	4	17	-	2	25
28	유선/무선/EMC/EMF	2	2	4	-	2	10
29	무선	-	3	-	-	-	3
30	무선/EMC/SAR/EMF	-	18	15	5	2	40
31	무선/EMC	-	4	5	-	-	9
32	EMC	-	-	9	-	-	9
33	유선/무선/EMC	2	4	6	-	-	12
34	무선	-	2	-	-	-	2
35	유선/무선/EMC	2	2	3	-	-	7
36	무선/SAR	-	2	-	3	-	5
37	유선/무선/EMC/SAR/EMF	2	3	11	2	2	20
38	무선/EMC/SAR	-	4	6	5	-	15
39	유선/무선/EMC	2	4	10	-	-	16
40	유선/무선/EMC/EMF	2	2	2	-	2	8
41	무선/EMC/SAR/EMF	-	15	10	10	2	37

기관	시험분야	유선	무선	전자파 적합성 (EMC)	전자파 흡수율 (SAR)	전자파 강도 (EMF)	총인원수
42	무선/SAR	-	2	-	2	-	4
43	무선/EMC/EMF	-	2	3	-	2	7
44	유선/무선/EMC	2	2	3	-	-	7
45	유선/무선/EMC/EMF	2	4	6	-	2	14
46	유선/무선/EMC/SAR/EMF	2	2	2	2	2	10
47	유선/무선/EMC	2	2	8	-	-	12
48	유선/무선/EMC	2	2	6	-	-	10
49	무선/SAR/EMF	-	5	-	2	2	9
50	EMC	-	-	2	-	-	2
51	EMC	-	-	2	-	-	2
52	무선	-	3	-	-	-	3
53	무선	-	2	-	-	-	2
총계		62	237	415	89	70	873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조문이 해설서 배포를 통해 입법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표명 중이며, 현재 실무수행 시에도 각 시험분야별 서로 다른 2명의 시험원이 확보되도록 지정 및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정부기관의 재정이 추가로 집행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해당 조문 해석에 대한 법률 자문 : `22. 6월

o 추진계획 수립 및 고시 개정 연구반 회의 추진 : `22. 9~12월

o 이해관계자(53개 시험기관) 의견수렴(연구반안) : `23. 1월

※ (연구반안 마련) 해당 시험분야별 최소 2명은 다른 시험분야에 대한 겸직 금지

o 우리원 고시자문위원회 자문 : `23. 2월

o 법률전문가 검토 회의(서면) 및 최종안(수정안) 마련 : `23. 4월

※ (수정안 마련) 시험분야의 수가 복수인 경우 각 해당 시험분야별로 서로 다른 시험원을 최소 2명 확보

2. 향후 평가계획

o 사후평가 시점 : 고시 발령 이후 3년 주기로 재검토

o 규제집행 모니터링 계획 및 방법 : 「전파법」에 따른 검사(정기(2년), 수시) 또는 심사(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등 수행 시 규제집행 모니터링 수행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시험기관의 변경신청 건에 대한 현장심사 면제 확대를 위해 제6조제2항의 일부 문구 변경 및 제8조제5항 삭제	23년 8월 예정

4. 종합결론

o 해당 조문이 행정청의 취지 및 운영 현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

- 규정을 명확하게 예측되도록 개정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확보로 투명한 행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 (수정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o 기존법령에 따라 시험분야별로 2명 이상의 시험원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므로, 본 규제 도입으로 추가 고용 인력 비용 발생은 없음 o 시험분야별 서로 다른 2명의 시험원 확보로 적합성평가 시험의 신뢰성이 제고되며, 방송통신기재재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 (수정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지정시험기관		
활동제목	시험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비용항목	노동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3	0	
	2024	0	
	2025	0	
	2026	0	
	2027	0	
	2028	0	
	2029	0	
	2030	0	
	2031	0	
	2032	0	
	합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지정 시험기관 수) x (신규 고용인력 규모) x (신규 고용인력 인건비)		
근거설명	○ 시험원 자격 요건 강화에 따른 신규 인력 고용시 노동비용 증가 ○ 분석기간 : 3년(일몰, 2023년 하반기 시행으로 1차년은 1/2 적용) ○ 피규제자수 : 지정시험기관수 전망 – 구득 가능한 기간내 지정시험기관 통계(2015년~2022년) 에서 지정시험기관수가 선형의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분석기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를 적용하여 지정시험기관수를 전망함 〈지정시험기관수 추이 및 전망〉		

년도	지정시험기관 규모
2015	43
2016	44
2017	48
2018	49
2019	49
2020	53
2021	51
2022	53
2023	**54**
2024	**55**
2025	**57**

※ 자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현황 통계, 2023년이후 전망

○ 지정시험기관 당 신규 채용 규모 : 미발생

–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지정시험기관은 모두 기존 법령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시험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어 본 규제 도입으로 추가 고용 인력은 없음

〈시험기관별 지정받은 시험분야 및 시험분야별 시험원 수 현황, 2022년〉

기관	시험분야	유선	무선	전자파 적합성 (EMC)	전자파 흡수율 (SAR)	전자파 강도 (EMF)	총인원수
1	무선/EMC/EMF	-	2	16	-	4	22
2	유선/무선/EMC/EMF	2	2	13	-	2	19
3	유선/무선/EMC/SAR	2	2	12	2	-	18
4	무선/EMC/EMF	-	6	18	-	2	26
5	유선/무선/EMC/SAR/EMF	2	11	33	5	2	53
6	무선/EMC	-	3	4	-	-	7
7	유선/무선/EMC/SAR	2	3	7	2	-	14
8	유선/무선/EMC/SAR/EMF	2	2	14	2	2	22
9	유선/무선/EMC	2	2	3	-	-	7
10	유선/무선/EMC/EMF	2	2	2	-	2	8
11	무선/EMC/EMF	-	8	18	-	2	28
12	유선/무선/EMC/SAR/EMF	4	5	4	2	4	19
13	유선/무선/EMC/EMF	2	2	2	-	2	8
14	무선/SAR/EMF	-	9	-	3	2	14
15	무선/EMC/SAR/EMF	-	2	14	2	2	20
16	유선/무선/EMC/SAR/EMF	2	28	17	15	2	64
17	무선/EMC/EMF	-	2	3	-	2	7
18	유선/무선/EMC/SAR/EMF	2	11	23	7	2	45
19	유선/무선/EMC/SAR/EMF	2	17	35	9	10	73
20	유선/무선/EMC/SAR/EMF	2	5	14	2	2	25
21	유선/무선/EMC/EMF	2	4	4	-	2	12
22	유선/무선/EMC/SAR/EMF	2	2	2	2	2	10
23	유선/무선/EMC	2	2	3	-	-	7
24	유선/무선/EMC/SAR/EMF	2	7	12	5	2	28
25	EMC	-	-	4	-	-	4
26	유선/무선/EMC	2	3	8	-	-	13
27	유선/무선/EMC/EMF	2	4	17	-	2	25
28	유선/무선/EMC/EMF	2	2	4	-	2	10

기관	시험분야	유선	무선	전자파 적합성 (EMC)	전자파 흡수율 (SAR)	전자파 강도 (EMF)	총인원수
29	무선	-	3	-	-	-	3
30	무선/EMC/SAR/EMF	-	18	15	5	2	40
31	무선/EMC	-	4	5	-	-	9
32	EMC	-	-	9	-	-	9
33	유선/무선/EMC	2	4	6	-	-	12
34	무선	-	2	-	-	-	2
35	유선/무선/EMC	2	2	3	-	-	7
36	무선/SAR	-	2	-	3	-	5
37	유선/무선/EMC/SAR/EMF	2	3	11	2	2	20
38	무선/EMC/SAR	-	4	6	5	-	15
39	유선/무선/EMC	2	4	10	-	-	16
40	유선/무선/EMC/EMF	2	2	2	-	2	8
41	무선/EMC/SAR/EMF	-	15	10	10	2	37
42	무선/SAR	-	2	-	2	-	4
43	무선/EMC/EMF	-	2	3	-	2	7
44	유선/무선/EMC	2	2	3	-	-	7
45	유선/무선/EMC/EMF	2	4	6	-	2	14
46	유선/무선/EMC/SAR/EMF	2	2	2	2	2	10
47	유선/무선/EMC	2	2	8	-	-	12
48	유선/무선/EMC	2	2	6	-	-	10
49	무선/SAR/EMF	-	5	-	2	2	9
50	EMC	-	-	2	-	-	2
51	EMC	-	-	2	-	-	2
52	무선	-	3	-	-	-	3
53	무선	-	2	-	-	-	2
총계		62	237	415	89	70	873

주: 2022년 12월말 기준임
자료: 국립전파연구원

○ 신규 채용 인력 임금

– 지정시험기관로부터 개별 임금 데이터 확보가 불가하여 대리지표로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에서 임금을 추정함

–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시험원은 중급숙련기술자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은 엔지니링업체 임금실태조사에서 월 평균근무일수 20.6일 기준 1일 202,588원으로 나타남

– 이를 년 단위로 환산하면 시험원의 연간 임금은 50,079,754원으로 추정됨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2022년〉

(단위: 원, 1일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주: 월 근무 평균일수 20.6일

자료: 엔지니어링협회(2022.12)

〈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 〉

년도	지정시험기관 규모 (단위: 개수)	추가 고용인원 (단위: 수)	추가 고용인원당 연간 임금 (단위: 원)	비용 (지정시험기관x 추가고용인원x 인원당 연간임금) (단위: 원)	비고
2023	54	0	50,079,754	0	하반기 시행으로 1/2적용
2024	55	0	50,079,754	0	
2025	57	0	50,079,754	0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활동제목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편익항목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방송통신가자재를 제조, 판매 및 유통 등을 하려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함 – 지정시험기관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및 유통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의뢰받아 신뢰성 있는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시험결과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인증, 등록 등을 위한 필수 조건임 ○ 지정시험기관이 시험분야별로 서로 다른 2명의 시험원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적합성평가 시험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됨 ○ 궁극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이 안정적인 시험원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신뢰있는 시험결과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임 ※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